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2015153 판결 [토지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20151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0가합53285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1. B

2.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준

변론종결 2024. 8. 29.

판결 선고 2024. 12. 1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0가합532855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① 주위적으로, 136,000,000원 및 그중 12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 피고 B, D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주로, 제1심이 원용하고 있는 피고 B에 대하여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및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탓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항소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H가 들어서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기로 하는 해제조건을 정하였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으며, 피고 B, D은 기망행위 내지 그 방조행위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면 6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2. 7. 2021고단2250호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원고를 비롯하여 Q, R에게 매매 대상 토지가 제주 G이 들어가는 옆에 위치한 H 토지 중 일부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기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B이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6. 18. 2022노3408호로 원고 및 Q에 대한 사기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되, 다만 R에 대한 사기는 무죄로 판단하여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정해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과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0063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9면 1행의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를 "관련 형사사건에서 항소심까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면 5행의 "같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기지급 매매대금 전액이 원고의 손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13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 D의 과실상계 주장 및 판단

피고 B, D은, 원고가 단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무리하게 투자를 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주장한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340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B, D이 원고에게 행한 공동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정도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거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B, D의 소멸시효 항변 및 판단

피고 B, D은, 원고가 2019. 9. 26. 수사기관에 위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므로 그 무렵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3. 11. 21.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피해자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65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들은 고소를 당한 이후 현재까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사기 혐의를 극렬히 다투고 있는 점,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한 끝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피고 B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를 명하여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점,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1심 법원이 피고 회사의 영업직원 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으로 추가 확보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 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를 감안하더라도,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피고들을 고소한 시점에 원고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적어도 관련 형사사건 1심 법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진 2022. 12. 7. 이전에는 원고로서는 위 피고들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나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들의 공탁금 공제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 원고 앞으로 1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24. 5. 17. 공탁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금 제11143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 주장 자체로 이를 위자료 명목으로 공탁하였다고 하고 있다.1) 더욱이 위 공탁은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일 뿐이고, 원고가 이를 손해배상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공탁금에 관하여 피고들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대웅

판사황성미

판사허익수

1) 피고들의 2024. 6. 28.자 준비서면